

Vol.1519

# 법원공보

2017. 5. 1. MON.



법원행정처

## ● 목 차

예 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819     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

신법령 목록            821

## 예규

### ◎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24호 2017. 4. 17. 결재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법원(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포함)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(연구반, TFT 등 포함)의 참석수당, 안전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참석수당) ① 대법원(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포함)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(연구반, TFT 등 포함, 이하 같다)에 참석한 위원(연구반원, TFT팀원 등 포함,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1일당 100,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,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.

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(200자 원고지 120장)을 초과하고,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00,000원 범위 내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원고료 지급기준 등) ① 새로운 책자를 집필한 경우 책자의 종류에 따라 200자 원고지 1장의 분량당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. 다만, 원고 내용의 난이도, 독창성, 학술 또는 사법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30%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.

1. 학술 논문 : 4,500원
2. 실무제요 : 3,500원

3. 재판실무편람, TFT나 연구반 등에서의 발표문, 각종 법령·업무해설서 또는 매뉴얼 : 2,500원

② 기존의 책자를 수정하여 집필한 경우 책자 전체 중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된 비율을 산정하고, 책자 전체 분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1.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/4 미만인 경우 : 제1항 기준의 20% 적용
2.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/4 이상 2/4 미만인 경우 : 제1항 기준의 40% 적용
3.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2/4 이상 3/4 미만인 경우 : 제1항 기준의 60% 적용
4.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3/4 이상인 경우 : 제1항 기준의 80% 적용

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한 경우
2. 복사, 문서편집기에의 수록, 수기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자료, 법령, 교재, 논문 등 그 자체를 이기 또는 전사한 경우
3. 기존 책자의 숫자나 오자, 탈자만을 단순 수정한 경우

④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검토수당 등 사례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원고료 조정)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고료를 각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자의 내용이나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각 집필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 또는 버림 등의 처리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책자 집필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자 전체의 원고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참여 집필자에게 동등한 비율 또는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 ● 신법령 목록 (2017. 4. 1. ~ 4. 15.)

		공포일	관보호수	관보면수
<b>【법률】</b>				
법률제14759호	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2017. 4. 11	18987	3
<b>【조약】</b>				
조약제2346호	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	2017. 4. 4	18982	3
조약제2347호	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	2017. 4. 12	18988	3
<b>【대통령령】</b>				
대통령령제27975호	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	2017. 4. 3	18981	4
대통령령제27976호	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6
대통령령제27977호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7
대통령령제27978호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4. 7	18985	4
대통령령제27979호	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	2017. 4. 11	18987	4
대통령령제27980호	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	"	"	4
대통령령제27981호	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	"	"	6
대통령령제27982호	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7
대통령령제27983호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
대통령령제27984호	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
대통령령제27985호	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9
대통령령제27986호	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1
대통령령제27987호	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2
대통령령제27988호	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3
대통령령제27960호	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중정정	"	"	14

**【총리령】**

총리령제1385호	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4. 4	18982	16
총리령제1386호	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4. 7	18985	4
총리령제1387호	국가공무원 복무규칙	2017. 4. 13	18989	4
총리령제1388호	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"	"	36

**【부령】**

국토교통부령제412호	운항시간 조정·배분 등에 관한 규칙	2017. 4. 3	18981	8
산업통상자원부령제250호	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2017. 4. 4	18982	18
보건복지부령제492호	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8
국토교통부령제414호	공항시설법 시행규칙중정정	"	"	19
문화체육관광부령제292호	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4. 6	18984	3
산업통상자원부령제253호	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4. 7	18985	60
해양수산부령제228호	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62
보건복지부령제493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4. 10	18986	4
산업통상자원부령제254호	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4
산업통상자원부령제252호	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	"	"	12
행정자치부령제116호	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2017. 4. 12	18988	36